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단5184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정일배,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백인광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3억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표시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 사이에 2019. 2. 14. 체결한 매매예약, 피고 B, D 사이에 2021. 5.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피고 B, C과 공동하여 5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8. 2. 접수 제1677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B에게 이자 연 20%,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4개월로 구두 약정하고 2018. 7. 26. F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3,000만 원, 2018. 8. 13. G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1,000만 원 등 2021. 12. 9.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46,926,658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256,249,000원만을 변제받았다.

위 상환금을 대여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2021. 12. 9.까지 대여원금이 368,173,254원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천원 이하를 버린 368,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갑 1 내지 10호증, 갑17호증의 3, 을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2018. 7. 26.부터 2021. 12. 9.까지 F, H, I, J, K 및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B 또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 명의 은행계좌, 또는 피고 B의 채권자의 은행계좌로 합계 446,789,618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 B가 2021. 10. 25. 원고에게 ‘피고 B고가 2019. 1. 3.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21. 10. 29.,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 (2) 그러나 한편,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6호증, 을 9호증의 2, 을 14호증의 1, 2, 을 16, 17,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준 돈은 2018. 9. 6.자 500만 원 단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K 명의의 위 은행계좌 거래내역에서는 피고 B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관련된 거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M과 그 배우자를 비롯한 M의 친족들과의 자금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 피고 B는 2020. 10. 5. F에게 1억 1,5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F은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자가 아니었던 사실, 피고 B는 2021. 3. 24. K 명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6,500만 원을 이체받았다가 같은 날 이를 피고 B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문회계사인 N에게 이체하였는데, 이후인 2021. 7. 21. 처인 피고 D를 통하여 장모인 피고 E으로부터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받은 돈 2억 원을 빌려서 K 명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여 주는 등 N과 함께 K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변제한 사실, 피고 B가 M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기 이전인 2021. 10. 2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N 역시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당시 피고 B는 M으로부터 위 돈 2억 6,5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돈거래와 관련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3)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부분의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K의 계좌는 원고가 아닌 M이 이용하였던 은행계좌로 보이는 점, F 명의의 공정증서상의 실제 채권자가 F이 아니므로 피고 B나 N이 작성한 공정증서상의 채권자인 원고도 실제 채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N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M이 피고 B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돈과 관련하여 피고 B를

연대보증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원고와 피고 B가 직접 돈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돈 거래 관련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이는 점(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K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와 거래를 한 자는 원고가 아닌 M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피고 B가 M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앞서 주장한 원고의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은 피고 B, C 사이의 매매예약과 피고 B, D 사이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 D, E은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부동산의 표시

1.토지

경기도 오산시 대 330㎡

2.건물

경기도 오산시 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오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65.91㎡

2층 65.91㎡

3층 28.38㎡

끝.

